

<p>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이 따라야 하므로 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은 시공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매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으며</p> <p>일곱째, 안 제31조의3 규정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12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와 신설되는 공원녹지 등의 설치비용을 구청장이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시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는데 이 경우 법령상에는 보조금액을 기초조사비 및 공공시설 사업비의 각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은 공공시설로 설치토록 명문화되어 있음에 따라 동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주택재개발 조합의 영세성과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한다면 시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한 도로 등에 대한 보조범위를 넓혀 수혜범위를 확대시키되 보조율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위법성 시비를 해소하고 주택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</p> <p>마지막으로 부칙 제7조에는 공공시설설치비 용보조등에 관한개정규정은 사업시행 고시가 되지 아니한 구역 중 별표의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 봉천 제7-2 재개발구역 조합원이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연전의 열악성을 들어 건축심의가 통과된 상황에서의 용적률 하향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</p>	<p>사업과 관련된 시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양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'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첫째, 재개발구역내 시유지를 재개발조합 및 점유자에게 매각할 재산으로 총정1-3구역 등 4개 구역의 20필지이고 면적은 8,319㎡인데 금액으로는 5,041,160천원이고 둘째, 재개발구역내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는 재산으로 홍제14구역 등 239필지이고 면적은 12,007㎡인데 금액으로는 4,640,803천원이 계상되어 있음.</p> <p>○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시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계획인 동 변경계획(안)은 공유재산 매각관련 규정과 공유재산의 무상양도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65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제출년월일: '98.9. 제출자: 서울특별시장</td></tr> </table> <p>1.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'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</p> <p>2. 주요내용 '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시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무상양도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</p> <p>○ '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계상 계산 · 처분: 시유지 매각 4개구역 20필지 8,319㎡ 5,041,160천원 시유지 무상양도 3개구역 239필지 12,007㎡ 4,640,803천원</p>	의안 번호	65	제출년월일: '98.9. 제출자: 서울특별시장
의안 번호	65	제출년월일: '98.9. 제출자: 서울특별시장		